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554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2021.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11. 10. 접수 제56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6. 8. 피고에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34.90%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에 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6. 28.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C에게 도달하였다.

다. 2022. 4.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2,962,905원, 이자 3,682,900원 합계 6,645,805원이다.

라. C의 아버지인 망 E이 2021. 10. 6.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C, F가 있다.

마. 피고와 C, F는 망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망 E의 지분 1/2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0.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11. 10. 접수 제560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 C의 무자력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에게는 부친인 망 E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중 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C에 대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 당시 C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거나 또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C가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 E의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망 E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고, 망 E의 병원비,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C에게 현금을 증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는, 답변서에서 그 주장 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7.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그 제출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진행된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음에도 그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주장내용을 위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 E의 지분 1/2 중 C의 상속지분(2/7)에 해당하는 1/7 지분($= 1/2 \times 2/7$)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21. 11. 10. 접수 제560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